
2019년 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9.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9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19.2.19.(화) 10:00 ~ 12:1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19-2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결재문서

- (2018-22) :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70,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 결재문서

- (2018-23) : 「2018년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 (2018-24) :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 결재문서 중 붙임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19-21) : 부분인용

- (2018-22) : 부분인용

- (2018-23) : 부분인용

- (2018-24) : 인용

【 의안번호 2019-21호 이의신청 】

안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결재문서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1호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주무관〉

○ 안녕하세요?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21호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업체의 등록취소 사유에는 대표의 범죄경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업체명, 등록취소 사유, 대표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이므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

하고, 업체 대표의 범죄경력도 할부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이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 안전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 위원님이 주 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 안전 관련해서 비공개된 것이 업체명하고 등록취소 사유,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다?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그 2개에 대해서 다 이의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등록취소 업체명은 공개를 할 예정이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이것은 공개하려고 논의가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주무관>

- 일단 저희가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참고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공개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되어 있고,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려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 메뉴를 보고 그 정도 선까지 공개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등록취소 사유가 민감하게 ○○○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해야 될지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업체명까지만 공개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에 들어가도 이 업체 대표가 ○○○을 받았더라든가 등록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업체의 공개내역을 보면 왜 이 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았더라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전의무비율 위반’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업체 대표가 ○○○이 확정이 되어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취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 업체가 선수금 미보전으로 해서 할부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었고, 이것을 이유로 등록취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업체명은 공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비공개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라든가, 범죄경력조회결과 회신이라든가, 이것 전체를 다 비공개하려는 생각이

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개인 이름과 범죄경력 부분을 비공개할 생각이신 겁니까?

<○○○ 주무관>

○ 개인 이름도 업체명이 공개가 되면 어차피,

<○○○ 위원>

○ 당연히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나오겠죠.

<○○○ 주무관>

○ 어차피 공개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 위원>

○ 그러면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붙임1, 2, 3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범죄경력조회결과 회신, 이 3개를 모두 다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생각은 아니신 것이죠?

<○○○ 주무관>

○ 본 문서 중 처분보고 문서는 범죄경력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를 할 예정이고, 첨부문서에는 처분보고에 나와 있는 사실 외에, 전체 비공개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보고서, 이것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업체명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결과가 기재된 내용, 그것은 비공개할 생각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리고 별첨문서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비공개할 생각이시라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시면서 본문에서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 것하고, 비공개할 생각이 있으신 것하고, 여기에 표시된 것하고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법인명을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본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법인명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비공개할 생각이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네, 업체명 공개하고요. 그리고 대상업체, 업체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자, 소재지까지는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비공개를 하려면 비공개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민감정보로서 사생활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법인정보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 일단 별첨 3개 문서가 또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비공개하는 이유는 뭘니까? 아예 3개를 완전 비공개로 하셨거든요.

〈○○○ 주무관〉

- 첫 번째 청문조서랑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더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범죄경력조회결과도 범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주재자 의견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이지요? 이것도 똑같은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 업체명은 공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되면 대표자의 이름이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을 받았다는 것이 또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공정위 정보공개 부분을 캡처한 것이 있는데,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로 해서 해당업체가 등록 취소된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입니까?

<○○○ 주무관>

- 네. 그쪽 정보메뉴로 들어가서 이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표자 성명이나 등록번호, 법인번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이런 것들은 다 등록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재무현황 같은 것들도 다 공개, 어쨌든 다른 루트를 통하면 찾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네요. 선수금 보전현황도 알 수 있고, 선수금 보전계약을 한 기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 위원>

-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 자료만으로는 혹시 ○○○○을 받았다는, 대표자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 주무관>

- 네, 없습니다.

<○○○ 위원>

- 그냥 '할부거래법 제20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부분공개가 이미 된 사항입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공개된 것이죠? 노블라이프라는 회사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대표자는 범죄경력조치를 당했고, 할부거래법 위반을 했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네요.

〈○○○ 위원〉

○ 그런데 법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어쨌든 업체명을 공개하면 대표자 이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는 것도 사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된 문서 안에서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만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렇죠.

〈○○○ 위원〉

○ 저는 붙임3은 전체 비공개를 하고, 붙임1, 2는 법인명은 공개하되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다음에 개인의 주소, 개인의 ○○○○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비공개해서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주심위원님이 의견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나 의견이 정해졌으면 말

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두 번째 장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 처분사유’에도 ○○○ 확정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 확정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근거 법률도 그렇고, 그 외에는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 맨 끝에 범죄경력조회결과 회신 일부, 이것도 비공개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공개를 해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 위원>

-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것들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들을 공개하는 부분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처분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보고’라는 문서를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비공개된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공개 부분만 특정하겠습니다.
- 1번에 ‘문서의 번호’, 2번에서 ‘노블라이프’라는 회사의 이름, 그다음에 ‘청문실시 ’18년 12월 5일 참석’ 이 부분은 청문이 실시된 사실 자체는 비공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개가 되어도 무방하죠. 그리고 3번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현장점검일 ’17년 1월 5일’도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개요에서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의 주소’는 비공개, 나머지는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처분사유’에서 ‘○○○ 확정으로’도 비공개해서 노란색으로 놔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지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붙임문서에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같은 경우는 주심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개인 성명, 그리고 당사자 진술내용 요지 중에서 ‘○○○ 확정’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 그리고 나머지 서명 날인한 부분도 비공개하면 될 것 같고, 청문주재자 의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 확정’, 그리고 ‘○○ ○○’ 부분이 비공개입니다.
- 종합의견에서 처분대상 업체 대표자의 별표 중에 ‘○○○ ○○○○○ 확정’ 이 부분은 비공개, 조치의견에서도 ‘○○○이 확정’은 비공개, 그다음에 날인 부분은 비공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그리고 범죄경력조회는 전체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붙임문서3은 전체 비공개입니다.
-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실까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전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은 부분인용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21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9-22호 이의신청 】

안건명 :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70,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 결재문서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2호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저는 법률지원담당관 ○○○○○○ ○○○입니다.

〈○○○ 주무관〉

○ 저는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22호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습니다.

- 청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종결보고 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문서에는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소송상대방 및 소송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7호의 규정을 비공개 근거로 명시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정판결로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7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방금 설명 들으신 안전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 주무관〉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4호, 7호로 나왔는데 이것은 6호를 잘못 표시하신 겁니까?

〈○○○ 팀장〉

- 네. 저희가 내용을 6호로 기재했는데 클릭할 때 4호, 7호로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6호, 7호에 해당하는가를 심의하면 되겠네요. 행정소송 종결보고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비공개된 부분인데 등록 취소된 업체의 이름까지 비공개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업체 이름이 당사자명이 되는데 사건번호랑 당사자명이 같이 공개가 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내용을 전부 볼 수가 있고, 판결문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소송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유 4호를 적용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6호나 7호를 적용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가 서울특별시인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서울’과 사건번호를 치면 모든 사건의 진행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사실상 사건번호를 아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있어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저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지금 등록취소 사유가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이 임원인 회사인 겁니까?

〈○○○ 팀장〉

-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이 임원인 회사가 해당 법률상 등록취소 사유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처

분한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 3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 회사가 등록취소 되었다는 사실은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 팀장>

○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공정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부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라서 행정적인 처리 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위원>

○ 지금 비공개된 것만 보면 사실은 소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비공개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는 그렇다고 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팀장>

○ 이러한 처분을 몇 월 며칠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등록취소 사유 자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 사실 자체도, 소송 진행여부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굳이 밝히고 싶어하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런데 법인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다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공개되었을 때 법인의 경영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업체는 이미 등록이 취소가 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팀장〉

- 대법원 판결 중에서 2007두2798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무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판례에 보면 “정보공개법 9조1항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는 일단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등록이 취소되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법인격 자체가 소멸되었다든지 법인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인격 자체가 소멸되어서 영원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 그런데 저희가 단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업체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서 등록이 취소되었는가 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등록이 취소가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

고 있어야만 하는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팀장>

- 이것이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진행 중인 소송이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이든 종결이든 정보가 조금이라도 공개가 되면 부정적으로 파급효과가 많이 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원처분이 등록취소 처분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만약에 신청인이 등록취소 처분에 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처분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공개대상일까요, 아닐까요?
-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등록처분 취소를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공개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위원>

- 하여튼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소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회사가 등록 취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 아닙

니까?

〈○○○ 팀장〉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에 관한 정보가 이 소송 자체는 종결이 되기는 했지만 본안 판결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 소송에 관해서도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라든지 후속절차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4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 소송에 관한 정보로서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소송에 관한 정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입수하려고 하면 실제로 입수할 수 없는 판결문들이 더 많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도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봐도 판결문이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식회사에서 서울시의 취소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원래 재판은 공개이지 않습니까. 판결도 공개고 다 공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이쪽 당사자인 서울시가, 더더군다나 정보공개 의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가 그 당사자를 위해서 뭔가를 보호해 줄 책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 팀장>

-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공개적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저희 내부기관끼리, 아니면 내부부서끼리라도 부적절하게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송배상청구를 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단지 소송을,

<○○○ 위원>

- 문제는 뭐냐 하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 팀장>

- 그러니까 판결문을 읽어보면 소송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 위원>

- 그렇지만 어쨌든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법원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카피계획 같은 것들을 걱정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 팀장>

- 거기에 대한 취지는 제가 확인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

- 일단 궁금한 것은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보면 이 업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문서번호를 특정했지 않습니까?
- 이 문서목록은 뜨는 것이죠? 다 공개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청구한 것이죠?

〈간사〉

- 네, 맞습니다.

〈서기〉

- 그리고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이 업체의 취소처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당연히 사건번호는 공개가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서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지금까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사건번호나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공개를 안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나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의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공개가 되는 쪽으로 결과가 바뀌었나요?

〈○○○ 주무관〉

- 사건번호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청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의 경우에도 그렇고, 굳이 소송 사건번호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팀장>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소송에 관한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회자료를 낼 때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에는 사건번호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 소송 사건번호가 공개된 사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이제는 대법원장이 사건번호,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 말고 기계어로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

- 올해 1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 위원>

- 그런데 그 경우에도 당사자는 당연히 지워져 있을 것이고, ○○○, △△△,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 위원>

- 그렇죠. 비실명화되어 있죠.

<○○○ 위원>

- 그 경우에 사건번호가 공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주무관>

-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다 익명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는 피고라든가 원고명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번호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사건번호 외에 사건개요하고 소송 진행상황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거든요. 피고에 대해서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런데 원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 3심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소송 진행상황은 몇 월 며칠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언제 판결 선고가 났다.’ 이것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당해사건 판결문을 구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 팀장〉

- 사건개요는 해당사건 내용을 저희 서울시의 관점에서 요약해서 내부보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됐을 때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이것은 저희 관점에서 요약을 해 놓은 것이니까, 저희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이라서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부분은 주로 사건 진행날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워낙 관련 소송이 상조업체에 관련한 소송이 많다 보니까 날짜라든지 진행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이 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특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했던 겁니다.

<○○○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번호를 공개하면 다른 방식으로 판결문을 구하고 그 판결문 안에 개인정보라든지 영업상에, 지금 우리가 원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문밖에 없거든요. 대법원 판결문은 판결의 이유라든지 청구취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종결보고 원천문서에서 보면 이 회사가, 만약에 사건번호를 제외하고 업체명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 업체가 할부거래업자로서 등록취소에 해당해서 등록취소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데 결국 패소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등록취소가 마땅하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업체명만 공개했을 때 사실 공개되는 정보는 그 정도 정보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 어떤 개인정보와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 있는지요?

<○○○ 팀장>

-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정보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 위원>

- 어떤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팀장>

- 대법원 사건번호입니다.

〈○○○ 위원〉

- 사건번호를 제외하고 업체명만 공개했을 때요.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된 것은 사실 원래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보라고 보여지는데 업체명까지 비공개할 사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 팀장〉

- 이 업체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서 소송을 했고, 1, 2, 3심 패소까지 하게 됐고, 패소까지 했으면 소송비용 채권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관해 다른 책임도 질 것인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사실 이것이 서울시가 당사자, 원고 혹은 피고인 경우의 판결문은 다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 주무관〉

- 판결문은 어차피 법원에서도 공개요청을 하면 익명처리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면 익명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지금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취소 사유로 이러한 사유가 있고, 이 업체가 이 사유에 해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당한 사업수행으로 인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설사 이것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7호에, 다시 나호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설사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호에 적용을 받아서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주무관〉

-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원고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어있기는 합니까 다만 어쨌든 법인 이름이니까요.
- 만약 원고가 개인이라면 익명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법인이라든가 공개가 된다면 그것은 법인의 영업상 이익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영업상 이익에 저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를 예외적으로 7호에 규정해 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외의 또 예외로서 공개될 사안이 또 있다는 말이죠.

할부거래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할부거래법에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해 놓고 등록을 굳이 취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비자 보호가 취지일 텐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취소가 됐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판단 정도가 국민한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 위원〉

- 대법원 판결을 계속 봐도 원심판결 사건번호들이 다 나오거든요. 대법원 입장에서 원심판결 사건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상 비밀보호하고 크게 관계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피고의 이름이나 당사자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지우거든요. 그런데 사건번호만큼은 원심판결에 관한 것도 다 지금 제시를 하는데,

<○○○ 팀장>

- 저희는 당사자가 서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공개되어 버리면 서울이라는 정보와 결합해서,

<○○○ 위원>

- 예를 들어서 ‘소득세 부과 처분’ 그러면 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전세무서, 그리고 원심사건에서 무슨 무슨 법원, 사건번호, 그러면 다 나오는 것이죠.

<○○○ 위원>

-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부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약에 1심, 2심 판결문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판단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사건 판결문에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 사건번호를 통해서 원심의 사건번호를 당연히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판결문 안에 들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영업상의 비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대법원 사건번호를 비공개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의 이름,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할부거래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취소 처분을 받았고, 결국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도 등록취소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영업상 비밀에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7호 나호에 해당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름까지는 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개요, 소송진행 상황도 마찬가지로 공개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 그래서 행정소송 종결보고 문건에서는 대법원의 사건번호만 제외하고 저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붙임문서에 확정원, 판결확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사건번호하고 사건명, 원고 이름이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름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원심판결의 사건번호만 비공개하고 원고의 이름, 원고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사건번호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사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별로 없는 것이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는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번호 같은 것들은 판결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인 것이고, 단순히 사건번호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비공개에서 개인정보, 적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건에는 개인정보가 없으

니까 더 비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인용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올해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공개가 확대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원고이거나 피고인 경우에 소송정보들을 변함 없이 가급적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제가 계속 대법원 판결문을 찾고 있는데요, 등록취소 키워드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된 것에 대해서 개인은 지워버렸는데 법인명은 당사자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위원〉

-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팀장〉

- 재판이나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재판정에 나와서 변론기일이 공개된다는 것 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공개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송의 상대방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시민이고 민원인인데 소송을 제기하시고도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처분에 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건번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행정청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일반법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서울시라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인의 이익도 있고 해서 사건번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결정이 되면 저희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다른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

- 충분히 그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고려해 주실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애로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애로도 있거든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의 경영적인 이해관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기본권인 알권리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서울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될 원칙적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이 사람이 서울시 사이트에서 관리번호를 다 받아서 봤을 텐데,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 주식회사라는 데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서울시 내부분서에도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 위원>

- 사건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일단 회사명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6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을 얘기하지 법인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7호인데, 7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공개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나목에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원고명은 공개를 하되,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 위원〉

- 위원장님은 사건번호 비공개의 근거를 몇 호로 보시나요?

〈○○○ 위원〉

- 근거가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법원 사건번호만 가지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문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번호도 공개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알면 1심, 2심 판결까지 다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1심, 2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비공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결국 사건번호 공개여부는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어떤 결론을 딱 정해 놓고 사건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것이 공익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되어야 될 판결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익명 처리되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가려진다는 전제 하에 공개되어야 마땅한 판결문이 있고, 또 정말 내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아무리 성명에다가 익명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공개가 마땅하지 않은 판결문도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판결문은 사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 이 사안에 1, 2심 판결문이 첨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쨌든 비공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

- 저도 결론은 일단 법인명은 공개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사건번호 같은 경우는 말 씀하셨듯이 지금 피고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이 사건은 보니까 변론기일도 한 번 두 번밖에 안 열렸고 간단해 보입니다만 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복잡하거나 법률대리인이 어떤 자가 선임되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같은 것이 충분히 공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원고 측, 행정소송을 제기한 측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는 7호에서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충분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또한 소송의 진행과정 자체가 예외사유 나목에서 말하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사건번호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건개요하고 소송 진행상황의 경우에는 이 문서 내에 기재된 사항만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기재가 된 것은 맞지만 굉장히 객관적 정보들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건개요도 처분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개요와 소송 진행상황도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확정증명원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사건번호는 비공개되는 것이 맞고, 이것은 하급심도 마찬가지로 다 비공개가 되고, 나머지 법인이름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다음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법인명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주소나 대표자는 제 생각에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나오는 것이어서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원심판결에 대한 사건번호, 이 두 가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원고명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시 자료에서도 다 뜨고, 또 법인명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도 원고명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 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원고 또는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실은 서울시가 공익적 성격의 소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얼마큼 정보들을 확대해 가야 되는지를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판단이 여태까지는 비공개였는데 공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나 소송 진행상황은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하고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의 의견이 같다라고 보여 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원고명과 사건개요, 소송 진행상황은 공개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건번호, 그다음에 1심, 2심 사건번호, 판결문과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번호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22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9-23호, 24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8년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 결재문서 중 붙임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3호, 24호 역사도심재생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주무관님께서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역사도심재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법률지원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23와 24호, 역사도심재생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구인은 2018년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및 세운재

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통보 결재문서 중 붙임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비공개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과정인지 밝히고, 해당 문서는 생산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들으신 안전설명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나요?

<○○○ 주무관>

- 요지는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청구인이 현재 토지주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지금 붙임문서랑 자문회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붙임문서에 있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붙임2. 세운재정비축진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주로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고, 통보가 됐습니까?

<○○○ 주무관>

- 토지주에게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열람할 수가 없나요?

<○○○ 주무관>

- 열람은 안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서들이 생산된 시점은 작년 중반 정도인데 마지막 참고자료에 보시면 보도자료에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수정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이것이 공개됐을 때 어떤 것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관〉

- 우선적으로 현재 세운재생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관할구청에 제반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서 관할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얻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해당구역에 있는 토지주의 75%가 동의하게 되면 그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5%가 찬성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 25%는 강제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게끔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세운재생자문단’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건축심의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건축심의 전에 세운재생자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있던 모든 사항들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 사업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이름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고, 저희 역사도심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고시가 난 계획이고, 그 계획이 작년 '18년도 상반기에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도 여기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라 그것도 공개가 된다면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민원인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에 대해서 저희는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 이 자문내용에서 조금, 공개됐을 때 민감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주거총량기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 주무관〉

- 저희 현재 계획상에는 주거 50%, 그리고 오피스텔 10% 포함해서 6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비율에서 주거의 용도를 하게 되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계획안을 저희 쪽에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주거를 60%로 제한한 이유는 그 지역이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주된 용도가 상업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주거용도를 계속 넣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 계획을 변경하려면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방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추후 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결정이 아직 안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 이것을 비공개한 사유는 서울시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시행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또는 영업·경영상의 차질, 이것은 지금 비공개 사유는 아니죠?
- 지금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익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비공개 사유는 아니었죠?

<○○○ 주무관>

- 제가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사업시행인가 다음 절차가 관리처분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 위원>

- 서울시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공개가 되면 서울시 행정에 난맥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무관>

- 네, 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축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 건축주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문제도 있으니까, 권리도 있으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5호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예컨대 7호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도 있고, 다른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지,

<○○○ 주무관>

- 저희는 5호만이요.

<○○○ 위원>

- 지금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사업시행인가는 난 것이고, 관리처분인가는 안 난 상태입니까?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 주무관>

- 현재 3구역에 총 10개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3-1, 3-4, 3-5는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3-2, 3-6, 3-7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3-3, 3-9, 3-8, 3-10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입니다.

<○○○ 위원>

-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난 곳은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공개 문서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될까요?

<○○○ 주무관>

- 지금 현재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에서는 3-1, 3-4, 3-5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자문의견의 주된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3-3, 3-9, 3-8, 3-10, 3-5, 3-1, 이것에 관련된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6, 7은 어떻습니까?

<○○○ 주무관>

○ 3-7은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세운재생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 6도 그렇습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심의하고 할 때 그러면 일반민원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지구단위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다 보면 민주사회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주로 사업시행업자하고 서울시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 주무관>

○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으면, 민원형태로 받습니다.

<○○○ 위원>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 대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냥 민원이 나오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자문의견이 나왔을 때 ‘자문의견을 기초해서 봐라. 출입구를 바꾸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민원이 나오는 것하고 민원의 성격이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제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주출입구라고 합시다. 일반민원인이 ‘출입구를 왜 우리 쪽에 안 내고 저쪽에 내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민원인은 ‘자문의견을 보니까 출입구를 이쪽에 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저쪽에 내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용은 똑같은데 근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행정과정에서 처리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우선 세운재생자문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과보고가 작성되는데, 전문단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인분들 의견보다는 좀 더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이 민감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을 많이 어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도시계획적으로 타당하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민원은 엄청나게 제기되는 사안이고, 이 자문의견이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행정을 방해할 만큼 이상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 주무관>

- 지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 위원>

- 네, 민감한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때 뭔가 일이 더 어려워지는가. 물론 분명히 양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합리성이 없다고 제기면 되는 것이지, 또는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절차나 과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달라질까요?

- 이런 것은 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과정은 공개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

에서 결정을 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이 공개되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자문내용이 공개되면 건축사가 앞으로 이런 의견을 안 내놓을 것이다, 또는 담당부서에 있는 부서원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못 할 것이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방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무관>

- 네. 민원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사업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 데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그 정도 방해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을지면옥,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니까 여론이 있고, 이 여론 때문에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바로 이 여론을 다른 말로 하면 민원입니다. 저는 사실 반대인데요,

<○○○ 위원>

- 사실 아까 주거비율 가이드라인을 세우셨다가, 그 이후에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잠깐 있었다가, 다시 또 을지면옥 등 노포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변경

되고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인에 대한 대책마련,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잘은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밀려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보상이 감정평가 정도 금액으로 되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여쭙습니다.

〈○○○ 주무관〉

○ 법령상으로는 공시지가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 파악상 사업 시행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그 웃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셔서,

〈○○○ 위원〉

○ 그렇게 되면 수용권을 쥐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

○ 왜냐하면 몇몇 구역들은 계획서를 보니까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 기존 상업지역 내에 있었던 수많은 가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겠고, 그런 것에 관련해서 토지주든 임차인이든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의견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았습니다.

또 최근에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종전 계획수립에 반영되지 못했던 노포, 오래된 가게를 지키는 문제, 생활유산, 공구거리, 이런 생태계들이 보존되

어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의견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민원도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이런 계획들이 공개되고, 또 토지주든 임차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사실 이 계획이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론을 잡는 주거청년기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이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며칠 전에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명래 고약을 만들었던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식 다방이 있어 가지고 계란 노른자 들어간 쌍화차도 팔아서 먹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주거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 지역의 성격을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한 채 결정이 되고, 결정되고 나서 의견을 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것이 공개가 될 경우 부동산 투기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을까요?

〈○○○ 위원〉

-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 주무관〉

- 아무래도 개발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역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역에서도 분명히 개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됐으니깐 거기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소유주 분들께서는, 소유주든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 위원>

- 그런데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하고 크게 관련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 않나요?

<○○○ 주무관>

-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많은데요, 3구역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유주 분들께서 임차료를 올리고 계십니다.

<○○○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겠죠?

<○○○ 위원>

- 그렇죠.

<○○○ 위원>

- 그럼요.

<○○○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여쭙보는 것인데 이것이 추가로 공개됐을 때 이 계획상 ‘나는

이 지역이 돈이 뜰 것 같아.'라는 식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고,

<○○○ 위원>

○ 주거비율 같은 것이 올라가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도대체 뭐가 역사도심재생인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으로는 소유주도 밀려나고, 임차인도 밀려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설사만 좋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상 3도심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역사도심입니다.

<○○○ 위원>

○ 글썄요. 역사도심이 주거지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을지로4가 앞 건물
도 새로 재개발된 것인데 거기의 원래 소유주나 임차인들의 재정착 비율은 어
떻게 됩니까?

<○○○ 위원>

○ 거의 없으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지금 소유주들은 대부분 부재지주이고요, 정말 그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

당히 아쉽습니다.

〈○○○ 위원〉

- 네, 아쉽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에서 “소유주, 상인,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셨고, 이 청구인이 실제 토지주이고, 이해당사자이고, 저는 의견을 벌써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공개되어야 되는 정보가 아닌가. 다만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주거비율 자체는 이미 여러 번 얹어졌고 새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실 서울시 인권종합계획 5개년 계획 안에도 도시권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것도 있고, 특히 역사보존이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적어도 이런 지구단위개발 같은 것 가능하면 열어두고 많은 사람들의 논의 속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사결정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과정에 방해된다는 개념 자체를 좀 바꿨으면, 오히려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지구단위개발이든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아파트나 짓고 그러기에는, 의견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역사도심재생’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사실 역사는 것은 하나의 관공서가 독점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어서 비공개를 하신다면 언제쯤이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주무관>

-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관리처분인가 시점, 그것이 언제쯤일까요?

<○○○ 주무관>

-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워낙 변수도 많고, 이것이 사실 1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토지소유자 분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일정을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지금 을지로 철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가 나자마자 누구 독립운동가 가옥을 보존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헐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사실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 상황이니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 위원〉

- 일단은 문제가 매수방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정말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개된 자료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공개가 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가 안 됐지만 공개가 된 것이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의견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공개됐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공개가 된 상황 아닙니까?

〈○○○ 주무관〉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 공개는 안 하고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용도는 무엇이며, 그 정도의 정보만 자료로 공개가 됩니다.

〈○○○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면 이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역사도심재생과 주무관님이 추가로 겪는 고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이거나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지금 붙임문서 중에 ‘세운재생 자문도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각종 배치도, 계획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영업상 비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 주무관〉

- 그러니까 75%의 동의자들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세운재생자문을 받기 전에 저희는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계사를 고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축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 나머지 지주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관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이 세운재생 자문도서의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 주무관〉

- 건축설계사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건축설계 회사 이름이 있다든지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 가지고,

〈○○○ 주무관〉

-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개석상에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내보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름은 빼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런 정도 같은 것은 인가가 되고 할 때는 다 공개되는 수준 아닙니까?

<○○○ 주무관>

○ 그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큰 개요 정도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지고,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단순히 사업시행자들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잠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구청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제3자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다 밝혀서 공문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하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실 여기 산업생태계에 관련된 분들이 임차인까지 포함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몇 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정보가 그 간에 공개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구역별로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옛길도 보존하고, 필지를 다 잘라 가지고 소규모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고, 노포도 보존하고, 이런 것만 봐서 이렇게 생활 숙박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 같은 것이 들어올 것이라는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 그전에 너무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지금 새로 검토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과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지금 그런 취지, 또는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첫 번째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에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자문단의 이름하고, 붙임문서 중에 서명부가 있는데 서명부는 제가 볼 때 전체 비공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에서는 자문단의 이름을 비공개로 할 것인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보통 위원회의 위원 이름들 같은 경우는 소속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에 결정을 다 해 왔었던 전례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자문이나 위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사실은 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해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 그렇게 치자면 붙임문서 중에 자문단 서명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 위원〉

- 지금 자문단 1차, 2차, 3차, 4차에 들어오시는 자문위원들은 같습니까?

〈○○○ 주무관〉

-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 6호에 마목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마목으로 해서 공개하고 서

명부만 비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

-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호, 24호를 같이 결정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23호 붙임문서 중에 서명부만 비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는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2019-23호는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붙임3의 자 문단 서명부는 비공개, 나머지는 공개로 부분인용입니다.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3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9-24호입니다. 24호는 전체 모두 공개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24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이것으로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4분, 회의 종료】